

##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
제정	1996.	3.	1	조례	제 14호
개정	2000.	12.	29	조례	제 304호
	2003.	7.	1	조례	제 457호
	2003.	7.	31	조례	제 463호
	2004.	1.	15	조례	제 496호
	2004.	7.	24	조례	제 527호
	2005.	10.	5	조례	제 660호
	2006.	2.	17	조례	제 795호
	2006.	10.	13	조례	제 834호
일부개정	2012.	8.	3	조례	제1236호
일부개정	2013.	6.	11	조례	제1298호
일부개정	2014.	5.	2	조례	제1361호
일부개정	2015.	10.	6	조례	제1495호
일부개정	2017.	12.	11	조례	제1731호
일부개정	2018.	5.	14	조례	제1793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6. 11, 2015. 10. 6, 2017. 12. 11>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수당규정”이라 한다)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6. 11, 2014. 5. 2, 2015. 10. 6>

1. 일반직의사 : 별표 1
2. 일반임기제공무원 : 별표 2
3. 보건진료공무원(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) : 월 250,000원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3조(장려수당) 수당규정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·하수·폐수·쓰레기처리업무,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,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

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
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. <개정 2005. 10. 5, 2013. 6. 11, 2014. 5. 2, 2015. 10. 6, 2018. 5. 14>

제4조(일직·숙직수당)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(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)과 근무시간 외에 화재, 도난, 보안,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 근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직·숙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14. 5. 2, 2015. 10. 6>

[제목개정 2015. 10. 6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. 12. 2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7. 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7. 3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1. 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7. 2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60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2. 17 조례 제79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10. 13 조례 제83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8. 3 조례 제123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6. 11 조례 제1298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4. 5. 2 조례 제136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10. 6 조례 제1495호>

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2. 11 조례 제1731호>

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5. 14 조례 제179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5. 10. 6>

###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

구 분	전문의	일반의
월 수당 지급액	월 909,000원	월 818,000원

비고 :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의와 「의료법」 제5조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로 전문의를 제외한 일반의로 한다.

[별표 2] <개정 2015. 10. 6>

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

근무연수별 / 등급별	5급	6급
5년 이상	월 1,312,000원 이하	월 973,000원 이하
4년 이상	월 1,306,000원 이하	월 967,000원 이하
3년 이상	월 1,300,000원 이하	월 961,000원 이하
2년 이상	월 1,295,000원 이하	월 956,000원 이하
2년 미만	월 1,289,000원 이하	월 950,000원 이하

비고 :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.

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

[별표 3] 삭제 <2014. 5. 2>

[별표 4] <개정 2018. 5. 14>

### 장려수당 지급구분표

지급 대상	월 지급액
①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,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270,000원
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270,000원
③ 하수·폐수처리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270,000원

[별표 5] <개정 2017. 12. 11>

### 일직·숙직수당 지급 구분표

구분	일직	숙직
평일, 휴일 (대체공휴일 포함)	60,000원	60,000원
재택당직	20,000원	15,000원

비고 : 재택당직비는 3시간 이상 대기근무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서 적용한다.